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안자

- 의안번호 : 제2851호
- 제출일자 : 2023. 9. 26.
- 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2. 개정 이유
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「의료급여법」 시행규칙 제2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불요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2) 부패영향평가, 규제심사, 성별영향평가 결과: 적합

라. 입법예고 : 2023. 8.25. ~ 9. 14.

5. 검 토 의 견

□ 조례안 주요 내용

○ 개정 배경

본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(안 제2조의2)하려는 것으로, 안 제2조의2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려는 것임.

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신설 2014. 5. 28.>

이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 없음.

□ 종합 검토의견 :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 [전문개정 2011. 8. 4.]